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3. 11(목)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3. 3.
- 나. 제안자 : 유천호·김용근·오홍철·정종섭 의원 외 4인
- 다. 회부일자 : 2010. 3. 3.
- 라. 상정일자 : 2010. 3. 9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정종섭 의원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 선양과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 제5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규정에 사망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유천호, 김용근, 오홍철, 정종섭 의원 등 4인 의원이 2010년 3월 3일 발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

○ 사망위로금 지원(제5조제3항)

-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더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자 안 제5조의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 본 조례는 지난 2009년 2월 5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참전유공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09년 10월 5일과 2010년 1월 18일 등 2차에 걸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및 시행시기 조정 등 참전유공자들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했다고 판단됨.

금번에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있어서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그간 조례의 제·개정 경위를 통해 제기되어 왔던 형평성과 중복지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선 기존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선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서구를 비롯 한 4개 군·구가 3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거나 또는 지원할 예정임에 따라 자치군·구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현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 용진군 등 일부 구·군에서 조례를 제·개정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임.

이는 동일한 인천 시민의 일원으로서, 거주하는 구·군의 재정자립도나 행정 여건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받게 되는 결과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에서 사망위로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자체 지원규정을 가지고 있는 구·군 거주자의 경우에는 보훈처로부터 15만원, 인천시로부터 20만원, 자체 구·군으로부터 15~20만원 등 총 50~55만원을 받게 되므로, 일면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시와 구·군간의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급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0조제 3항에 의거 “시·도와 구·군의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 **구·군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종전의 조례 입법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21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수당 지급은 관할 구·군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구·군이 우선처리하고 시에서는 구·군간 지급액 차이를 보정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보완적인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하라는 **권고사항**이 시달된 바, 비록 권고가 법률상 구속력은 없으나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망위로금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 본 조례 제3조(지원대상)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입법 취지를 볼 때 연령제한의 타당성과 65세 미만 사망자의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시행일자와 관련하여

- 본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려면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유예기간과 시행일에 대한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조례입법의 원칙인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치 및 시와 군·구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행정의 보편성과 통일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최만용, 박창규, 오홍철, 이병화, 정종섭 위원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구·군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 방안과 발의 의원의 견해는?
- 지급을 10월부터 시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시행할 것을 제시한 근거는?
- 본 조례 개정은 부족한 국가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선진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소신껏 추진해야 하며, 오히려 향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더욱 늘리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답 변 >

○ 정종섭 의원

- 지원에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금번 조례 개정을 기회로 삼아 인천시 전체에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램.

○ 보건사회국장 이부현

- 기존 참전명예수당은 구·군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8만원 중 6만원을 구·군에 교부하고 2만원을 자체 부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구·군간 협의를 추진하고자 함. 따라서 사망위로금도 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됨.
- 사망위로금 예산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검토 및 타 시·도간 행정추진의 공존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2011년 본예산 편성 후 시행할 것을 제안한 것임.
- 참전유공자가 형평성 있게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되고 합리적인 행정추진 방안을 모색하겠음.

5. 토론요지

- 가. 찬성 : 최만용, 박창규, 오흥철, 이병화, 정중섭 위원
- 나. 반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u>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u>	제5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u>
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사망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u>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 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사망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 <신설></p> <p>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 -----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 -----.</p> <p>② (현행과 같음) 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5조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 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p> <p>④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사망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사용료)”을“(참전명예수당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사망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u>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u>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 ----- <u>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u>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사망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u></p>